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6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금융권금리가 저이율로 유동됨에 따라 상환이자율 조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일반융자금의 이자를 년5퍼센트에서 연3퍼센트로 조정(안 제4조제4항)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중 “년5퍼센트”를 “연3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940-4391
입안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사회담당	이 관 식
	담당자	박 해 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융자금액등)④제2항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<u>년5퍼센트</u> 로하되,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하며,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.	제4조(융자금액등)④----- ----- <u>년3퍼센트</u> 로----- ----- -----